# 제6장

# 공청회 개최

## **™** 개요

위원회는 4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을 위하여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의결 과정에 폭넓은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에 따라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 1 개요

위원회는 제53차 회의(2013. 12. 23.)에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과 배임수 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제54차 회의(2014. 1. 20.)에서 제9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수정안과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 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한 다음, 2014. 2. 17.(월) 서울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13:30부터 18:20까지 양형기준안(수정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2 공청회 참석자

제9차 공청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구회근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발표를 한 후,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임수중재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학진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종훈 경향신문 디지털뉴스 편집장, 최승재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성매매범

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김은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민경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박수정 변호사, 한상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하였다.

## 3 공청회 주제

2013. 12. 23. 위원회 제53차 회의에서 의결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 매범죄 양형기준안과 2014. 1. 20. 제54차 회의에서 의결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개별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의 적정성,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 양형기준 범죄군 명칭 변경,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 4 공청회 진행 일정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3:30 ~ 13:35	개회식	운영지원단장
13:35 ~ 13:40	인사말씀	양형위원회 위원장
13:40 ~ 14:10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4:10 ~ 15:0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5:00 ~ 15:1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10 ~ 15:25	휴식	
15:25 ~ 15:55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약취 · 유인범죄 양형기준안(수정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5:55 ~ 16:45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6:45 ~ 16:55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55 ~ 17:10	휴식	
17:10 ~ 17:30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7:30 ~ 18:0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18:00 ~ 18:1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8:10 ~ 18:20	마무리 및 폐회	운영지원단장

### 5 공청회 개최 결과

### 가 진행 경과

일반시민, 학회 연구원, 법학 전공 학생, 기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지정토론 자들의 토론을 방청하였으며, 이후 방청객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 나,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 배임수재와 달리 배임증재에서는 증뢰죄와 마찬가지로 증재액에 따라 권고 형량에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단순히 감경, 기본, 가중으로 구분 하는 것이 타당함
- ▶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의 경우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는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의제되지 않는 경우의 권고형량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안은 벌금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형법상 배임수중재죄는 법정형이나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며,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 지나친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수중재액이 적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할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것이 타당함
- ▶ 배임증재의 경우 유형 내 영역 간 권고형량의 폭이 일정한 데 비해, 배임수재 의 경우 위 형량의 폭이 넓어 재량이 여지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는바, 이는 양형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타당함
- ▶ 배임수재의 경우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것인지 애매하므로, 이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 다.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독직행위금지(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중 제33조 위반)와 관련하여 독직은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법률사무의 청렴성 유지' 라는 변 호사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필요함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과 관련하여 '변호사 아닌 자'에 대한 규정을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유형의 분류와 관련하여, 구간을 지나치 게 세분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구간 중복을 통한 모호성을 만들어내는 단점 이 있으므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구간을 하나로 묶거나, 3,000만 원 이상을 하나로 묶는 것이 타당함
-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유형의 분류와 관련하여, 이는 뇌물범죄와 함께 대표적인 부패범죄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범죄임을 감안할 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구간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을 합치되, 권고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유형의 양형인자인 '금품 기타이익의 반환' 과 관련하여, 이 범죄는 사후적으로 이익 등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그 자체로 위반상태가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라.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 유사한 범죄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체포·감금과 유기·학대의 범죄유 형 분류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하여 동 범죄의 기본범죄를 고려할 때 체포·감금치상/체포·감금치사, 유기·학대치상/유기·학대치사의 범죄유형과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학대중상해와 아동학대치사를 별개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여 형량을 정할 것이 아니라, 유기·학대치상/유기·학대치사, 체포·감금치상/체포·감금치사, 폭행범죄, 상해범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체포·감금의 경우 예컨대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여 체포·감금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실패한 경우와 같이 미수의 사 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유기·학대의 경우 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고 하더라도 형법의 체계가 미수범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범죄 에 미수를 감경요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 국민의 법감정과 선진국의 형량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권고형 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학대 역시 성적 학대 못지않게 아동 발달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마.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 양형기준 설정범위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만 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두는 것은, 조직화된 형태로 자행되는 성매매 강요 및 알선 관련 범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위 인자에의해 해당 범죄수익에 상응하지 않는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을 내림으로써오히려 성매매 현장의 음성적 착취구조가 근절되지 않고 성매매여성들에게이중의 압박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로서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두는 것은 19세 이상 대상 성판매 강요 수단에 있어서 '보호·감독 지위'를 '폭행, 협박 또는 위계'보다 그 비난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 성매매범죄의 경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성향범의 성격이 높은 점과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성매매 및 성산업 축소라는 목적을 달성한 국가들의 예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매수행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적극적 유인'을 감경요소로 볼 경우 성매수자들이 자신의 범죄혐의를 회피하거나 변명하는 것에 대처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13세 미만, 19세 미만, 19세 이상의 형태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바. 약취 · 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지정토론자 제시 의견

▶ 범죄군 명칭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상의 각 범죄 세부유형을 적시할 때에도 인신매매의 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약취 · 유인 · 인신매매범죄 라고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특별가중행위인자인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신분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위인자가 아닌 행위자/기타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인신매매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단순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 제1항)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형법 제287조)는 법정형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안과 같이 양자를 통합하여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할 것이 아니 라, 단순 인신매매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양자의 법정 형의 차이를 환기시키는 문구를 양형인자표 아래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특별감경요소인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와 형법 제295조의2 이른바 해방감경 규정과의 관계가 모호해보임
- ▶ 개정 형법이 제288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28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구형법보다 다양한 목적을 각각 추구하면서 이를 가중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난할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을 특별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비난할 목적'이 중첩적으로 고려되어 부당함

### 사. 방청객 의견

- ▶ 광고행위나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 빈번한 성매매의 현실과, 채권추 심, 연대보증 등 여러 장치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업자에게 예속시키 는 상황을 반영하여 양형인자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 성매매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을 여성에 대한 성착취 또는 폭력으로 보아, 성폭력과 같은 비중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2014. 2. 17.) |

# 제7장

#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자문위원 회의 개최

## ■ 자문위원 신규 위촉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통해 양형기준 설정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2012. 1. 9. 최초로 13인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3차례의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양형기준안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였다. 4기 양형위원회는 2014. 1. 9. 자문위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4. 3. 10.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12인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 ₩ 자문위원 현황

4기 자문위원단은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법학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 및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한 현황은 제1부 제2장 '양형위원회 구성'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 Ⅲ 제4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

# 1 개요

제4차 자문위원 회의는 2014. 3. 10.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고, 신규 위촉 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 자문위원단은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설정 및 수정 방향과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검토와 열띤 토론을 거쳐 다양한 자문의견을 제시하였다.

# 2 자문의견

### 가,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현저히 손상된 경우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학교의 신입생 선발업무나, 언론사 기자의 업무도 학교나 언론사의 규모, 인지도 등에 따라 공공성의정도나 사회적 신뢰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안과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공적 영역에 대한 처벌강화는 확대되어야 하고, 2차 피해자인 일반 대중의 신뢰 손상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나.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유형(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서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의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수수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정도로 금전적 이득이 중요한 양형요소라면, 이익이 반환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수액에따라 가중처벌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익이 반환되더라도 일반감경인자로만 반영하자는 의견은 변호사제도의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안과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재범방지의 필요성과 변호사법의 입법취지, 변호사법위반죄가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감경인자로 방추어야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다.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의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과 '성매매 알선 등' 유형에서 '처벌불원' 의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

엄격한 해석기준에 따라 면밀한 심리를 거쳐 인정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처벌불원이라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매매여성들이 사실상처벌불원을 강요당하는 현실과 처벌불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례에서 법관이 진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 나아가 기업적 성매매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라. 약취 · 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상향하는 등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가출청소년 중 대부분이 중학생인 점과 아동·청소년의 경우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가중인자로서의 피해자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피해자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에 앞서 13세 미만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리분별력 차이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제4기 자문위원 신규 위촉식(2014. 3. 10.) |

# 제8장

# 전문위원 연구

#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

### 1 경과

2013. 1. 28. 전문위원 제64차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위 계획안은 2013. 2. 4. 위원회 제46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전문위원 연구계획은, 구체적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설정을 목표로, 제4기 양형위원회 출범, 위원회 회의 일정,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과 제4기 양형기준 설정, 전문위원 조직 정비 등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된 것으로서, 법령 개정사항 및 양형실무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양형자료조사결과 및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분석을 토대로 제4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양형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보완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2 연구계획안 내용

주제별 연구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종합적 검토

### (1) 연구 목적

성범죄 양형기준 등의 수정으로 인해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의 수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의 합리적인 수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2) 연구 내용

사회적 여론과 다른 양형기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종 및 형량기준 수정 방안과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작 성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 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종합적 검토

#### (1) 연구 목적

전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의 합리적 수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2) 연구 내용

성범죄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 다른 양형기준과 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형종 및 형량기준 수정 방안,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등 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 다.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및 양형기준안 연구

### (1) 연구 목적

제4기 양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선정하고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한다.

#### (2) 연구 내용

양형기준을 설정할 대상범죄를 선정하는 원칙 및 고려사항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대상범죄를 선정한 후, 양형실무에 나타난 형종 및 형량 통계 등 분석을 통하여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에 대한 양형실무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형실무에 대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과거 형량의 상향 여부 등을 결정하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양형인자를 선정한 다음, 대상범죄군별 집행유예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을 작성 및 수정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 라.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 (1) 연구 목적

제1, 2, 3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양형기준간의 불균형이나 미비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 수정 방안을 마련한다.

#### (2) 연구 내용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적용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양형기준간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의 불균형 존재 유무를 검토하고, 개별 양형기준의 적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양형기준 전반에 걸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 마 집행유예 기준 개선 방안 연구

#### (1) 연구 목적

현행 집행유예 기준의 평가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집행유예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 (2) 연구 내용

외국의 집행유예 관련 입법례 및 양형기준을 연구한 뒤 이를 참고하여 현행 집 행유예 기준의 적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집행유예 기준 의 기본틀 또는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 바.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방법 연구

#### (1) 연구 목적

양형기준 수정 및 추가 양형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및 분석방법을 연구한다.

#### (2) 연구 내용

외국의 양형기준을 분석하고 양형기준에 대한 평가방법을 연구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항목을 선정한 뒤, 우리나라 양형기준 평가에 적합한 분석틀 및 분석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 3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요약

순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장
1	살인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종합적 검토	2월~ 4월	1팀
2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 수정 방안 종합적 검토	2월 ~ 4월	2팀
3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및 양형기준안 연구	5월 ~ 12월	분담

순번	연구과제	연구시기	분장
4	제1, 2, 3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6월 ~ 12월	분담
5	집행유예 기준 개선 방안 연구	7월 ~ 12월	1팀
6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방법 연구	7월 ~ 12월	2팀



| 전문위원 제79차 전체회의(2014, 3, 17.) |

# Ⅱ 전문위원 연구 성과

전문위원들은 확정된 전문위원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가.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및 양형기준안 연구

(1) 연구개요

-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방안
- ▶ 담당 : 조석영, 주용완, 최승워 전문위워

### (2) 내용

-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의 수 및 양형기준 의결 · 시행 일정 검토
-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선정 기준 및 선정 방안 검토
- ▶ 개별 범죄군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선정안 확정
- ▶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방안 검토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안 확정
-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일정 검토

## 나,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1) 연구개요

-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 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 담당 :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강동혁 전문위원

#### (2) 내용

- ▶ 특별법상 범죄 포함 여부 등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 방안 검토
-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 양형기준안 초안 작성
-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및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다.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1) 연구개요

-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 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 담당: 조석영, 주용완, 함석천 전문위원

#### (2) 내용

- ▶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 방안 검토
-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 양형기준안 초안 작성
-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및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라.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1) 연구개요

-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 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 담당 :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강동혁 전문위원

### (2) 내용

- ▶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 검토
- ▶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 방안 검토
- ▶ 유형의 명칭 적정성 검토
-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 양형기준안 초안 작성
-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및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마.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1) 연구개요

- ▶ 주제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위 확정, 유형분류, 권고 형량범위 설정, 양형인 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설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 담당: 조석영, 주용완, 함석천 전문위원

### (2) 내용

- ▶ 아동 · 청소년 음란물 제작 · 배포 · 소지 등 음란물 관련 범죄 포함 여부 및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설정 방안 검토
-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 양형기준안 초안 작성
- ▶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 양형기준안 수정 방안 검토 및 양형기준 초안 작성

## 바. 약취 · 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1) 연구개요

- ▶ 주제 : 양형기준 수정 배경 및 범죄군 명칭 검토,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수정 방안,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 ▶ 담당 :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강동혁 전문위원

### (2) 내용

- ▶ 형법 및 특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검토
- ▶ 범죄군 명칭 변경 여부 검토
-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수정 방안 검토
- ▶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검토
- ▶ 양형기준 수정안 초안 작성
- ▶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 ▶ 수정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제9장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 ☑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1 개요

양형위원회는 제4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으로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를,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으로 권리행사방해, 게임물, 장물, 손괴, 업무방해범죄를 각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지원단에서는 양형기준 연구에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고 대외적신뢰를 제고하여 원활한 양형기준 설정에 기여하고자 양형자료분석관들로 하여금 각급 검찰청에서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차로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하여 33개 검찰청(지청 포함)에서 2013. 8. 5. ~ 8. 30.까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2,46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2차로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하여 29개 검찰청(지청 포함)에서 2014. 3. 3. ~ 3. 28.까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2,9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 2 조사현황

# 가. 전반기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2013. 8. 5. ~ 8. 30.)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감금	52
	감금교사	1
	감금치사	4
체포·감금·	감금치상	100
유기·학대	영아유기	39
	영아유기치사	3
	유기	6
	유기치사	12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존속감금	2
	존속유기치사	2
	중감금	6
	중감금치상	3
	직권남용체포	1
	체포	1
	체포치상	11
	특수감금	2
	특수감금치상	4
	특수중감금치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감금)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체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감금)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 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	3
	학대	2
	학대치사	1
	소계	3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18조)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19조)	5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20조)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21조)	1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	4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	247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알선영업행위등)	22
	소계	836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변호사법위반(109조)	178						
버즐티비	변호사법위반(110조)	2						
변호사법	변호사법위반(111조)	479						
	소계	659						
	배임수재	440						
배임수증재	배임증재	134						
	소계	574						
	총계							

<sup>※ 2008</sup>년부터 2012년까지 선고·확정된 사건으로 한정(다만,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선고·확정된 사건)

# 나. 후반기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2014. 3. 3. ~ 3. 28.)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강요	44
		강제집행면탈	195
권리행사		185	
방해범죄		폭처법(공동강요)	49
	폭치	h법(집단 · 흉기등강요)	20
		494	
		44조 1항 1호	81
	7  0  4  0  4  0  4	44조 1항1의 2호	1
		44조 1항 2호, 32조 1항 1, 4호	216
	게임산업법위반	44조 1항 2호, 32조 1항 7호	206
케이모바지		45조 2호	11
게임물범죄		45조 4호	197
		30조 1항 1호	185
	사행행위법위반	30조 1항 2호	5
		30조 2항 1호	7
		소계	909

범죄군	세부죄명	조사건수
	상습장물보관	1
	상습장물취득	2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115
	장물보관	23
	장물알선	105
	장물양도	7
	장물운반	22
	장물취득	182
장물, 손괴범죄	재물손괴	175
	특가법(장물)	112
	특수재물손괴	1
	폭처법(공동재물손괴등)	13
	폭처법(상습재물손괴등)	11
	폭처법(야간집단 · 흉기등손괴)	1
	폭처법(집단 · 흉기등손괴)	31
	폭처법(집단 · 흉기등재물손괴등)	236
	소계	1,061
	경매방해	154
A FINITION	신용훼손	1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247
멈쇠	입찰방해	43
	소계	445
	총계	2,908

<sup>※ 2009</sup>년부터 2013년까지 선고 · 확정된 사건으로 한정

# Ⅲ 제1, 2, 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운영점검

## 1 개요

살인 등 제1기 양형기준 7개 범죄군(2009.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및 약취·유인 등 제2기 양형기준 8개 범죄군(2011.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과 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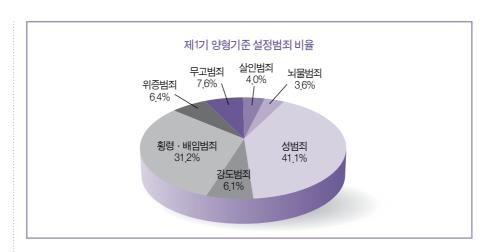
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2012.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선거범죄(2012. 9.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및 조세, 공갈, 방화범죄(2013. 7. 1.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 양형기준이 각 적용됨에 따라 운영지원단은 양형자료분석관을 통해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급 법원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조사하였다.

### 2 조사 현황

### 가. 월별 조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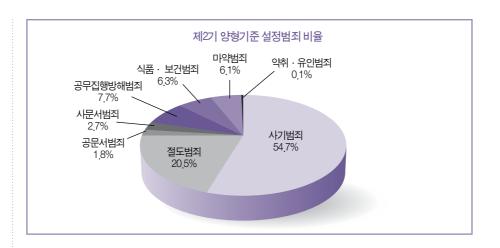
###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월				2	2013년	1				2	2014년	<u> </u>	TJAII
범죄균	2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살인	수	62	75	53	47	53	61	54	75	54	69	62	40	705
범죄	비율	8,8	10,6	7.5	6.7	7.5	8.7	7.7	10.6	7.7	9.8	8.8	5.7	100.0
뇌물	수	43	60	58	62	37	57	59	58	38	60	83	13	628
범죄	비율	6.8	9.6	9,2	9.9	5.9	9.1	9.4	9.2	6.1	9.6	13,2	2.1	100.0
서비지	수	504	577	426	505	484	622	747	845	668	688	694	402	7,162
성범죄	비율	7.0	8.1	5.9	7.1	6.8	8.7	10.4	11.8	9.3	9.6	9.7	5.6	100.0
강도	수	116	114	91	89	78	73	84	124	65	87	83	60	1,064
범죄	비율	10.9	10.7	8.6	8.4	7.3	6.9	7.9	11.7	6.1	8.2	7.8	5.6	100.0
횡령 .	수	427	566	399	477	434	393	511	589	424	466	541	214	5,441
배임범죄	비율	7.8	10.4	7.3	8.8	8.0	7.2	9.4	10.8	7.8	8.6	9.9	3.9	100.0
위증	수	114	108	84	102	103	70	106	86	87	99	100	60	1,119
범죄	비율	10.2	9.7	7.5	9.1	9.2	6.3	9,5	7.7	7.8	8.8	8.9	5.4	100.0
무고	수	77	137	102	116	106	94	128	139	105	129	124	60	1,317
범죄	비율	5.8	10.4	7.7	8.8	8.0	7.1	9.7	10.6	8.0	9.8	9.4	4.6	100.0
TJ ÷II	수	1,343	1,637	1,213	1,398	1,295	1,370	1,689	1,916	1,441	1,598	1,687	849	17,436
전체	비율	7.7	9.4	7.0	8.0	7.4	7.9	9.7	11.0	8.3	9,2	9.7	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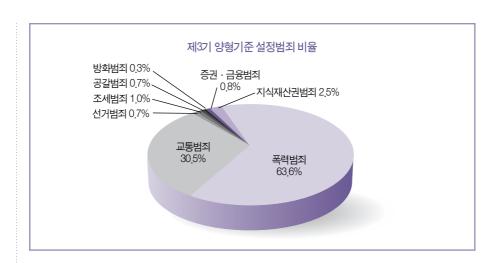
#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월				2	2013년	1				2	2014년	1	지테
범죄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약취·	수	8	7	5	8	1	4	1	11	0	6	6	2	59
유인범죄	비율	13.6	11.9	8.5	13.6	1.7	6,8	1.7	18.6	0.0	10.2	10.2	3.4	100.0
사기	수	2,683	3,211	3,027	2,896	2,969	2,992	3,394	4,271	2,779	3,226	3,876	1,791	37,115
범죄	비율	7.2	8.7	8.2	7.8	8.0	8.1	9.1	11.5	7.5	8.7	10.4	4.8	100.0
절도	수	1,288	1,422	1,146	1,188	1,169	1,164	1,235	1,461	1,070	1,141	950	687	13,921
범죄	비율	9,3	10.2	8.2	8.5	8.4	8.4	8.9	10.5	7.7	8.2	6.8	4.9	100.0
공문서	수	93	134	106	94	79	105	101	127	111	89	125	77	1,241
범죄	비율	7.5	10.8	8.5	7.6	6.4	8,5	8.1	10.2	8.9	7.2	10.1	6.2	100.0
사문서	수	140	169	164	162	127	168	152	217	128	161	175	88	1,851
범죄	비율	7,6	9.1	8.9	8.8	6.9	9.1	8.2	11.7	6.9	8.7	9.5	4.8	100.0
공무집행	수	404	421	414	489	404	442	515	573	433	430	396	295	5,216
방해범죄	비율	7.7	8.1	7.9	9.4	7.7	8.5	9.9	11.0	8.3	8.2	7,6	5.7	100.0
식품보건	수	285	325	293	351	369	434	384	498	378	385	347	240	4,289
범죄	비율	6,6	7,6	6.8	8.2	8,6	10.1	9.0	11.6	8,8	9.0	8.1	5.6	100.0
마약	수	346	372	329	377	321	342	459	402	325	299	330	205	4,107
범죄	비율	8.4	9.1	8.0	9.2	7.8	8.3	11.2	9,8	7.9	7.3	8.0	5.0	100.0
전체	수	5,247	6,061	5,484	5,565	5,439	5,651	6,241	7,560	5,224	5,737	6,205	3,385	67,799
선세	비율	7.7	8.9	8.1	8.2	8.0	8.3	9.2	11,2	7.7	8.5	9.2	5.0	100.0



##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월				2	2013년	1				2	2014년	1	전체
범죄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신세
증권·금융	수	11	47	30	54	38	28	23	68	41	51	44	20	455
범죄	비율	2.4	10.3	6,6	11.9	8.4	6.2	5.1	14.9	9.0	11.2	9.7	4.4	100.0
지식재산	수	128	154	109	101	148	107	114	138	133	128	129	70	1,459
권범죄	비율	8.8	10.6	7.5	6.9	10.1	7.3	7.8	9.5	9.1	8.8	8,8	4.8	100,0
폭력	수	3,228	3,245	2,927	3,021	2,995	3,228	3,778	4,307	3,000	2,901	2,945	1,966	37,541
범죄	비율	8.6	8,6	7.8	8.0	8.0	8.6	10.1	11.5	8.0	7.7	7.8	5.2	100.0
교통	수	1,775	1,777	1,489	1,607	1,455	1,534	1,631	1,806	1,257	1,392	1,289	983	17,995
범죄	비율	9.9	9,9	8.3	8.9	8.1	8.5	9.1	10.0	7.0	7.7	7.2	5.5	100.0
선거	수	114	69	50	46	32	20	20	11	9	21	16	5	413
범죄	비율	27.6	16.7	12.1	11,1	7.7	4.8	4.8	2.7	2,2	5.1	3,9	1.2	100.0
조세	수	0	0	0	4	19	52	62	87	73	87	118	92	594
범죄	비율	0.0	0,0	0.0	0.7	3,2	8.8	10.4	14.6	12.3	14.6	19.9	15.5	100.0
공갈	수	0	0	0	3	32	24	49	58	70	69	53	56	414
범죄	비율	0.0	0.0	0.0	0.7	7.7	5.8	11.8	14.0	16.9	16.7	12.8	13.5	100.0
방화	수	0	0	0	1	8	16	20	29	36	23	25	18	176
범죄	비율	0.0	0,0	0,0	0,6	4.5	9.1	11.4	16.5	20.5	13.1	14.2	10.2	100.0
저귀	수	5,256	5,292	4,605	4,837	4,727	5,009	5,697	6,504	4,619	4,672	4,619	3,210	59,047
전체	비율	8.9	9.0	7.8	8.2	8.0	8.5	9,6	11.0	7.8	7.9	7.8	5.4	100.0



# 나. 세부 죄명별 조사현황

해당기간(2013.  $4.1. \sim 2014.3.31.$ )에 조사된 제1기, 2기, 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세부 죄명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	세부죄명				2	013 <sup>1</sup>	đ				2	014կ	<u> </u>	전
죄	세구되당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체
	강간살인	0	0	1	1	0	0	0	0	0	0	0	0	2
	강도살인	2	2	1	1	0	1	1	1	0	2	4	0	15
	강도살인미수	0	0	1	0	0	0	0	1	1	0	1	0	4
	살인	20	34	19	19	21	20	20	28	19	33	26	11	270
살	살인교사	3	0	0	0	0	0	0	0	0	0	0	0	3
인	살인미수	31	37	26	23	29	34	30	37	27	27	30	15	346
범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0	0	0	1	1	1	0	3	3	1	0	3	13
죄	존속살해	3	1	3	1	2	4	1	3	4	4	1	6	33
	존속살해미수	2	1	2	0	0	1	2	2	0	2	0	5	17
	특가법(보복범죄등)	1	0	0	0	0	0	0	0	0	0	0	0	1
	특가법(보복살인등)	0	0	0	1	0	0	0	0	0	0	0	0	1
	합계	62	75	53	47	53	61	54	75	54	69	62	40	705

범	비타지대				2	013կ	년				2	014	년	전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체
	뇌물공여	21	20	35	30	21	27	25	27	15	28	40	9	298
	뇌물수수	18	20	14	16	8	18	16	20	10	15	24	4	183
뇌	부정처사후수뢰	0	5	0	0	0	1	0	0	1	1	0	0	8
물	수뢰후부정처사	0	1	1	2	2	3	2	0	1	1	1	0	14
범	제3자뇌물교부	0	2	0	0	1	1	0	2	1	0	3	0	10
죄	제3자뇌물취득	0	4	1	1	0	1	0	0	2	1	3	0	13
	특가법(뇌물)	4	8	7	13	5	6	16	9	8	14	12	0	102
	합계	43	60	58	62	37	57	59	58	38	60	83	13	628
	강간	9	18	14	12	8	16	26	26	30	23	19	18	219
	강간상해	12	12	10	10	15	16	13	9	11	4	11	6	129
	강간치사	0	1	0	1	0	1	0	0	0	0	0	0	3
	강간치상	18	18	15	16	9	17	20	24	16	14	14	9	190
	강도강간	1	2	0	1	1	2	1	3	1	0	2	0	14
	강제추행	127	138	110	143	128	195	230	294	223	261	285	146	2,280
	강제추행상해	6	3	4	3	4	2	1	6	2	2	2	0	35
	강제추행치상	10	9	7	2	4	8	16	5	12	8	3	6	90
	미성년자간음	1	0	0	0	0	0	2	1	1	0	1	0	6
	미성년자의제강간	2	5	0	2	4	3	1	3	1	3	2	0	26
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0	1	1	1	0	1	4	1	1	1	1	1	13
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	0	0	0	0	0	0	0	0	1	1	0	2
죄	상습강제추행	0	0	1	0	0	0	0	0	0	0	0	0	1
	상습준강제추행	0	0	0	0	0	0	0	0	1	0	0	0	1
	성폭력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5	5	3	3	1	2	7	3	3	13	5	58
	성폭력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0	0	0	0	0	0	0	0	0	1	0	0	1
	성폭력범죄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0	0	0	0	0	0	0	0	1	0	0	0	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	3	0	1	0	0	0	1	0	1	0	0	7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	0	0	1	1	0	0	1	1	2	0	0	7
	성폭력범죄(장애인강간)	0	0	0	0	0	0	0	0	0	1	0	0	1

범					2	013կ	<b>년</b>				2	014	<u> </u>	전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체
	성폭력범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0	0	1	1	2	0	2	0	1	0	1	0	8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1	5	1	5	0	3	0	4	1	2	0	0	2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1	2	0	0	1	0	0	0	2	3	1	11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0	1	0	1	1	0	3	1	1	1	0	10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0	0	0	0	0	0	0	0	0	1	0	0	1
	성폭력범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0	0	1	0	0	0	0	1	0	0	0	2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	3	3	0	1	3	1	3	3	0	0	0	20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6	11	2	3	3	2	1	1	3	0	0	2	34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1	0	1	2	0	0	0	0	1	0	0	0	5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0	0	0	0	0	0	0	0	2	0	0	0	2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	10	8	6	3	10	8	10	4	6	8	8	87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2	23	13	22	22	17	32	25	28	29	26	15	274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3	0	1	2	0	1	0	1	2	0	1	12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5	3	0	5	5	6	2	5	3	2	7	4	47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0	0	2	0	1	4	1	2	0	1	3	0	14
	성폭력범죄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3	0	1	2	3	1	2	3	2	7	2	1	27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7	8	3	9	5	8	7	8	9	7	7	1	79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8	8	7	5	7	9	9	11	3	5	8	3	8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3	5	1	3	4	6	7	9	6	5	8	6	6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2	8	1	2	8	7	11	16	15	4	7	6	87

점 세우석명 10을 12을 10을 10일 11일 12일 12일 23일 24 전 성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위계등간음)	범	내는 전혀				2	013¦	년				2	014կ	đ	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0 0 1 1 2 0 5 3 5 11 7 5 5 6 6 11 4 14 14 6 12 8 7 3 6 2 84 15 16 17 17 1		세무쇠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체
(장애인위계등간음) 5 0 11 4 14 6 12 8 7 3 6 2 84 6 2 84 84 84 7 4 4 7 6 4 1 3 2 84 84 84 7 4 4 7 6 4 1 3 2 84 84 84 84 7 4 4 7 6 4 1 3 2 84 84 84 84 7 4 4 7 6 4 1 3 2 84 84 84 84 7 4 4 7 6 4 1 3 3 2 54 84 84 84 87 84 84 84 7 4 4 7 6 4 1 3 3 2 54 84 84 84 87 84 84 87 84 84 84 7 4 4 4 7 6 4 1 3 3 2 54 84 84 84 84 87 84 84 84 7 4 4 4 7 6 4 1 3 3 2 54 84 84 84 84 84 87 4 4 7 6 6 4 1 3 3 2 54 84 84 84 84 87 4 4 7 6 4 1 3 3 2 54 84 84 84 84 87 4 4 7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7 4 4 7 6 6 4 1 3 3 2 54 84 84 84 84 84 87 4 4 7 6 6 4 1 3 3 2 54 84 84 84 84 87 4 4 7 6 6 4 1 3 3 2 54 84 84 84 84 87 4 4 7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7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7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4 87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4 87 4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4 87 4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4 84 87 4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4 87 4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4 87 4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4 87 4 4 4 7 6 6 4 1 1 3 2 54 84 84 84 84 84 84 84 87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7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7 84 84 87 84 84 87 84 84 87 84 84 84 87 84 84 87 84 84 87 84 84 84 87 84 84 87 84 84 84 87 84 84 87 84 84 84 87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7 84 84 84 84 87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10	0	1	1	2	0	5	3	5	11	7	5	50
(장애인위계등추행) 2 3 3 2 0 0 3 4 1 2 1 0 21			5	6	11	4	14	6	12	8	7	3	6	2	84
(장애인유사성행위) 0 1 0 0 1 0 2 0 1 2 1 1 1 9 9 점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준강간등) 0 2 3 2 1 6 7 12 8 0 0 0 0 41 전폭력범죄특례법 (장애인조강간등) 1 5 2 0 1 3 1 2 3 0 1 0 1 0 1 0 1 0 0 1 0 1 0 1 0 1 0 1			2	3	3	2	0	0	3	4	1	2	1	0	21
(장애인준강간등)			0	1	0	0	1	0	2	0	1	2	1	1	9
(장애인피보호자간음)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2	1	6	7	12	8	0	0	0	41
성폭력범죄특례법 (주거침입강간등) 8 11 1 4 20 24 26 32 30 22 22 26 13 26 32 30 22 22 26 13 26 32 30 22 22 26 13 26 32 30 22 22 26 13 26 32 30 22 32 30 22 32 30 30 32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0	0	0	0	0	1	0	1	0	0	0	0	2
(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경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군강자)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군강자)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군강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군강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군강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군강제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자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간)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간)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간)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간)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간)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간)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간)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간)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가장행)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가장행)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조가장행)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지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지추행)     성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지추행)     4     8     4     7     4     4     7     6     4     1     3     2     54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1	5	2	0	1	3	1	2	3	0	1	0	19
(친족관계에의한강간) 8 11 1 4 1 9 8 16 7 1 9 1 76 전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7 16 8 10 7 7 14 9 8 9 6 2 10 전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군강간) 2 2 0 1 0 0 1 0 0 0 1 1 8 전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0 0 3 1 5 0 5 1 3 4 0 24 전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자추행) 4 8 4 7 4 4 7 6 4 1 3 2 54 전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지추행) 4 1 3 6 1 5 6 2 5 1 0 0 3 3 4 전폭력범죄특례법(투수강지추행) 4 1 3 6 1 5 6 2 5 1 0 0 3 3 4 5 6 6 8 6 8 6 8 6 8 6 8 6 8 6 8 6 8 6 8			19	21	14	20	24	26	32	30	22	22	26	13	269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7 16 8 10 7 7 14 9 8 9 6 2 103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2 0 1 0 0 1 0 0 0 1 1 8 8 4 0 24 전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조간) 13 6 21 24 11 40 31 31 19 14 15 12 2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조간등) 4 8 4 7 4 4 7 6 4 1 3 2 5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4 1 3 6 1 5 6 2 5 1 0 0 3 34		9 1 14 1 1 14	8	11	1	4	1	9	8	16	7	1	9	1	76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     2     0     1     0     0     1     0     0     1     1     8       성폭력범죄특례법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     0     0     3     1     5     0     5     1     3     4     0     2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3     6     21     24     11     40     31     31     19     14     15     12     2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지추행)     4     8     4     7     4     4     7     6     4     1     3     2     5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4     1     3     6     1     5     6     2     5     1     0     0     34			7	16	8	10	7	7	14	9	8	9	6	2	103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     0     0     3     1     5     0     5     1     3     4     0     2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3     6     21     24     11     40     31     31     19     14     15     12     2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조강간등)     4     8     4     7     4     4     7     6     4     1     3     2     5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4     1     3     6     1     5     6     2     5     1     0     0     34			2	2	0	1	0	0	1	0	0	0	1	1	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4 8 4 7 4 4 7 6 4 1 3 2 5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4 1 3 6 1 5 6 2 5 1 0 0 34			2	0	0	3	1	5	0	5	1	3	4	0	2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4 1 3 6 1 5 6 2 5 1 0 0 3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13	6	21	24	11	40	31	31	19	14	15	12	23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4	8	4	7	4	4	7	6	4	1	3	2	54
성폭력범죄트레번(트수주강간) 3 8 8 9 15 11 11 8 10 10 15 10 11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4	1	3	6	1	5	6	2	5	1	0	0	3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3	8	8	9	15	11	11	8	10	10	15	10	118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수준강제추행)     0     4     0     3     4     1     2     2     1     2     0     2     21			0	4	0	3	4	1	2	2	1	2	0	2	2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3 53 30 40 47 32 32 42 30 34 32 10 42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3	53	30	40	47	32	32	42	30	34	32	10	425

범	내는 지점				2	013 <sup>1</sup>	년				2	014	크	전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체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강간등상해)	0	0	0	0	1	0	0	4	3	1	0	1	10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강간등치상)	0	0	0	0	0	0	3	0	3	3	0	1	10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	58	47	41	42	40	50	68	71	63	59	35	30	60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계등간음)	7	15	5	6	7	10	9	7	6	10	8	3	93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위계등추행)	3	5	4	6	6	4	12	10	4	10	6	6	76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유사성행위)	0	2	1	2	3	0	3	1	1	2	1	3	19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간음)	5	2	0	1	3	3	6	0	2	2	0	2	26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위계등추행)	0	0	0	0	0	0	0	0	1	0	0	0	1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추행)	1	0	0	0	0	0	0	0	0	1	0	0	2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11	12	5	18	12	8	12	9	10	14	19	12	142
	유사강간	0	0	0	0	0	1	2	4	2	5	3	2	19
	유사강간상해	0	0	0	0	0	0	0	0	1	0	0	3	4
	유사강간치상	0	0	0	0	0	0	0	0	2	0	1	1	4
	준강간	9	19	22	6	13	12	15	24	18	24	17	8	187
	준강간상해	0	0	0	1	0	0	1	0	0	0	0	0	2
	준강간치상	4	2	1	2	2	1	2	1	1	2	2	0	20
	준강제추행	17	23	24	22	19	36	37	47	29	39	36	28	357
	준강제추행상해	0	0	0	0	0	0	0	1	0	0	0	0	1
	준강제추행치상	0	0	0	0	0	0	1	1	0	0	1	0	3
	준유사강간	0	0	0	0	0	1	2	3	2	2	3	2	15
	합계	504	577	426	505	484	622	747	845	668	688	694	402	7,162

범	내보지어				2	013կ	đ				2	014	<u>đ</u>	전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체
	강도	5	8	7	8	4	10	12	9	5	10	6	2	86
	강도상해	44	48	32	34	39	26	31	53	31	27	29	31	425
	강도상해교사	0	0	0	0	1	0	0	0	0	0	0	0	1
	강도치사	0	0	0	1	0	0	0	0	0	0	0	0	1
강	강도치상	2	6	4	4	2	1	4	2	3	1	2	2	33
도범	준강도	6	3	4	7	0	4	3	4	4	6	5	4	50
죄	준특수강도	2	1	0	1	1	0	0	3	0	0	0	2	10
	특가법(강도)	0	0	0	0	0	0	0	0	0	0	1	0	1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0	0	2	1	2	0	3	0	0	0	0	10
	특수강도	55	48	44	32	30	30	34	50	22	43	40	19	447
	합계	116	114	91	89	78	73	84	124	65	87	83	60	1,064
	배임	22	25	19	28	24	26	42	40	30	29	32	16	333
	배임교사	0	0	0	1	0	0	0	0	0	1	0	0	2
횡	업무상배임	31	56	28	44	54	23	40	51	53	50	59	8	497
령	업무상배임교사	0	0	0	0	0	0	0	0	0	0	1	0	1
·	업무상횡령	178	209	158	191	151	142	208	244	173	186	201	83	2,124
배 임	특경법(배임)	15	30	14	30	20	21	21	23	11	13	32	2	232
범	특경법(횡령)	28	34	37	28	24	25	23	32	20	39	41	12	343
죄	횡령	153	212	143	155	161	156	177	198	137	148	175	93	1,908
	횡령교사	0	0	0	0	0	0	0	1	0	0	0	0	1
	합계	427	566	399	477	434	393	511	589	424	466	541	214	5,441
	모해위증	2	0	0	4	1	0	4	1	0	2	3	0	17
위	모해위증교사	0	0	0	0	1	0	0	0	0	0	1	0	2
증 범	위증	93	96	71	87	84	57	85	79	77	80	80	54	943
죄	위증교사	19	12	13	11	17	13	17	6	10	17	16	6	157
	합계	114	108	84	102	103	70	106	86	87	99	100	60	1,119
무	무고	77	130	97	116	104	93	125	137	102	125	124	56	1,286
고	무고교사	0	5	3	0	1	0	3	1	2	3	0	4	22
범	특가법(무고)	0	2	2	0	1	1	0	1	1	1	0	0	9
죄	합계	77	137	102	116	106	94	128	139	105	129	124	60	1,317
	전체	1,343	1,637	1,213	1,398	1,295	1,370	1,689	1,916	1,441	1,598	1,687	849	17,436

#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	세부죄명				2	013կ	đ				2	014կ	<u> </u>	전체
죄	제구의당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신세
	간음유인	0	1	0	2	0	0	0	0	0	0	0	0	3
약	미성년자약취	2	0	4	4	0	0	0	3	0	2	1	1	17
취	미성년자유인	3	3	0	2	1	1	0	2	0	1	1	0	14
	영리약취	0	0	0	0	0	0	0	2	0	1	0	0	3
유	영리유인	0	0	0	0	0	2	0	4	0	1	3	0	10
인	추행유인	0	2	0	0	0	0	0	0	0	0	0	0	2
범 죄	특가법(약취 · 유인)	0	0	0	0	0	0	0	0	0	0	1	1	2
긔	특가법(영리약취 · 유인등)	3	1	1	0	0	1	1	0	0	1	0	0	8
	합계	8	7	5	8	1	4	1	11	0	6	6	2	59
	사기	2,579	3,052	2,805	2,755	2,845	2,834	3,219	4,049	2,648	3,066	3,605	1,703	35,160
	사기교사	0	0	1	0	0	0	0	1	2	0	0	0	4
사	상습사기	9	14	18	12	8	8	8	13	9	9	16	5	129
기 범	준사기	1	2	0	0	2	0	3	2	2	0	2	4	18
죄	컴퓨터등사용사기	37	67	113	40	43	58	52	96	44	56	144	34	784
	특경법(사기)	57	76	90	89	71	92	112	110	74	95	109	45	1,020
	합계	2,683	3,211	3,027	2,896	2,969	2,992	3,394	4,271	2,779	3,226	3,876	1,791	37,115
	문화재보호법위반	0	0	7	3	3	3	5	9	2	2	0	1	35
	산림보호법위반	3	5	7	5	8	5	2	3	5	1	1	3	4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위반	12	21	13	20	13	15	20	14	14	21	13	13	189
	상습절도	0	0	0	0	0	0	0	1	0	0	0	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54	64	54	50	46	53	45	61	45	42	36	25	575
절	야간방실침입절도	9	6	8	5	2	4	3	8	2	1	4	4	56
도 범	야간주거침입절도	33	47	22	25	27	41	22	41	43	32	35	22	390
죄	절도	536	576	504	515	553	544	578	704	469	517	456	340	6,292
	절도교사	1	2	6	3	0	2	4	0	2	1	2	1	24
	특가법(산림)	0	6	1	1	0	4	5	4	1	1	1	3	27
	특가법(절도)	227	258	216	220	201	196	202	213	169	188	170	111	2,371
	특수절도	411	436	308	341	316	296	348	401	315	335	229	164	3,900
	특수절도교사	2	1	0	0	0	1	1	2	3	0	3	0	13
	합계	1,288	1,422	1,146	1,188	1,169	1,164	1,235	1,461	1,070	1,141	950	687	13,921

범	비브되며				2	013կ	<u> </u>				2	014կ	<u> </u>	지네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공문서변조	14	12	17	10	5	3	11	10	9	4	5	4	104
	공문서변조교사	0	0	0	1	0	0	0	0	0	0	0	0	1
	공문서부정행사	18	18	11	18	17	11	19	16	12	10	14	20	184
	공문서부정행사교사	1	0	0	1	0	0	0	1	0	0	0	0	3
	공문서위조	19	29	18	18	23	30	22	41	21	26	32	16	295
	공문서위조교사	0	0	0	0	0	1	0	0	0	0	0	0	1
공	<del>공</del> 전자기 <del>록등불</del> 실기재	24	32	42	32	18	38	25	43	52	34	51	27	418
문	공전자기록등위작	1	0	1	2	0	0	3	2	0	1	0	0	10
서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1	0	0	0	0	0	0	0	0	0	0	0	1
범	공정증서원본 <del>불</del> 실기재	10	28	14	9	11	18	11	10	6	8	9	6	140
죄	변조공문서행사	0	0	0	0	0	0	0	0	0	2	0	0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0	0	0	0	0	0	0	2	0	0	0	0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0	4	0	0	0	0	0	0	0	1	0	0	5
	위조공문서행사	1	3	1	1	1	1	0	0	10	2	7	1	28
	허위공문서작성	4	8	2	2	4	2	10	2	1	1	7	3	46
	허위작성공문서행사	0	0	0	0	0	1	0	0	0	0	0	0	1
	합계	93	134	106	94	79	105	101	127	111	89	125	77	1,241
	변조사문서행사	0	1	1	2	1	1	0	1	0	1	0	1	9
	사 <del>문</del> 서변조	8	8	7	13	7	11	5	17	6	6	19	4	111
	사문서부정행사	0	0	0	0	0	0	0	0	1	0	0	0	1
	사문서위조	117	146	141	134	102	148	134	188	111	143	142	77	1,583
	사문서위조교사	0	2	1	0	1	0	1	1	0	0	0	1	7
사	사문서위조행사	0	0	0	0	0	0	0	0	0	0	0	1	1
문	사전자기록등변작	0	0	1	1	0	0	0	0	0	0	0	0	2
서	사전자기록등위작	0	2	1	1	1	0	1	1	2	2	1	2	14
범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2	0	0	0	0	0	0	0	0	0	0	0	2
죄	위조사문서행사	9	6	3	3	3	2	6	3	0	6	7	0	4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4	4	6	8	7	5	5	5	4	3	4	2	57
	허위작성진단서행사	0	0	2	0	0	0	0	0	0	0	0	0	2
	허위진단서작성	0	0	1	0	5	1	0	1	3	0	1	0	12
	허위진단서작성교사	0	0	0	0	0	0	0	0	1	0	1	0	2
	합계	140	169	164	162	127	168	152	217	128	161	175	88	1,851

범					2	013կ	<u> </u>				2	014կ	<u> </u>	ᆔ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공무집행방해	331	326	344	348	322	326	405	440	341	311	281	235	4,010
	공용건물손상	0	0	0	0	0	0	1	0	0	0	0	0	1
	공용물건무효	0	0	0	0	0	1	0	0	0	0	0	0	1
	공용물건손상	36	32	33	41	33	33	37	52	24	39	30	20	410
공	공용물건은닉	0	0	0	0	3	0	0	0	0	0	0	0	3
무	공용서류무효	2	2	0	1	0	4	1	3	0	0	1	1	15
집	공용서류손상	1	6	2	2	0	4	2	3	4	3	2	6	35
행 방	공용서류은닉	0	0	0	0	0	1	3	0	0	1	0	0	5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10	17	5	25	17	20	25	32	23	19	33	7	233
범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0	0	0	0	0	0	0	0	0	2
죄	특수공무방해	0	0	0	0	0	0	0	0	0	0	0	1	1
	특수공무집행방해	14	25	14	49	16	28	26	27	17	29	28	19	2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7	12	14	22	13	24	14	16	23	28	21	6	200
	특수공용물건손상	2	1	1	1	0	1	1	0	1	0	0	0	8
	합계	404	421	414	489	404	442	515	573	433	430	396	295	5,21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3	6	14	11	15	21	18	14	11	29	18	6	1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52	54	56	55	47	47	76	75	49	45	58	33	647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0	0	0	0	2	0	1	0	0	0	1	5
식 품 ·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등)	0	0	0	6	4	0	0	7	0	4	2	0	23
보 건 범 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24	18	25	22	19	17	33	31	30	32	19	27	297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	1	0	0	0	1	0	3	7	0	0	1	0	13
			0						_			_	^	1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U	0	0	0	0	0	0	0	0	1	0	- 1

범	ullHalm				2	013կ	<u> </u>				2	014կ	<u> </u>	ᆔᆁ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식품위생법위반교사	0	0	3	0	0	0	0	0	0	0	0	0	3
	약사법위반	31	23	22	31	22	40	33	37	34	25	16	18	332
	의료법위반	61	69	51	61	61	82	24	72	65	64	45	36	691
	의료법위반교사	1	0	0	1	0	0	1	1	1	0	0	0	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5	10	12	25	30	30	17	40	24	21	44	22	2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0	0	0	0	1	0	0	0	0	0	0	0	1
	화장품법위반	2	0	5	1	4	2	1	3	2	4	0	0	24
	합계	285	325	293	351	369	434	384	498	378	385	347	240	4,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40	55	35	51	46	59	70	46	45	34	35	28	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	5	2	2	3	0	4	4	4	6	4	7	2	43
마 약 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269	274	274	286	251	243	355	329	242	246	269	161	3,199
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	32	39	17	37	24	35	30	23	30	15	15	13	310
	특가법(마약)	0	0	0	0	0	0	0	0	0	0	1	0	1
	특가법(향정)	0	2	1	0	0	1	0	0	2	0	3	1	10
	합계	346	372	329	377	321	342	459	402	325	299	330	205	4,107
	전체	5,247	6,061	5,484	5,565	5,439	5,651	6,241	7,560	5,224	5,737	6,205	3,385	67,799

#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	세부죄명				2	013է	<u> </u>				2	014է	<u> </u>	전체
죄	세무쇠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건제
증 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3	26	17	42	20	16	6	29	30	35	22	10	256
• 금 융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0	0	1	0	0	2	4	0	0	0	3	0	10
벙	증권거래법위반	1	0	6	3	3	4	3	17	0	0	3	1	41
죄	특경법(수재등)	2	5	1	1	4	1	1	6	1	2	4	0	28

범	ulletaled				2	։013կ	<u> </u>				2	014է	<u> </u>	TJ =11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특경법(알선수재)	4	12	5	7	7	2	9	11	10	10	7	8	92
	특경법(증재등)	1	4	0	1	4	3	0	5	0	4	5	1	28
	합계	11	47	30	54	38	28	23	68	41	51	44	20	455
	디자인보호법위반	0	2	2	0	1	2	1	1	2	4	3	0	18
지 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0	2	2	3	5	2	5	5	5	11	2	0	42
재 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 보호에관한법률위반	0	0	0	0	0	0	0	0	1	0	0	1	2
권	상표법위반	75	90	56	63	107	61	70	72	84	74	68	41	861
범 죄	실용신안법위반	1	0	1	0	0	0	0	1	1	1	0	0	5
_	저작권법위반	52	60	47	35	35	37	38	56	39	36	56	28	519
	특허법위반	0	0	1	0	0	5	0	3	1	2	0	0	12
	합계	128	154	109	101	148	107	114	138	133	128	129	70	1,459
	상습존속폭행	0	0	0	0	0	0	0	0	0	0	0	1	1
	상습폭행	0	0	1	0	0	0	0	0	2	0	0	0	3
	상습협박	0	0	0	1	0	0	0	0	0	0	0	0	1
	상해	1,261	1,295	1,208	1,190	1,173	1,228	1,434	1,713	1,181	1,159	1,126	821	14,789
	상해교사	0	0	0	0	0	0	0	0	1	0	2	0	3
	상해치사	5	7	1	6	5	13	11	14	8	10	8	6	94
	존속상해	8	6	15	6	7	14	15	15	8	4	7	3	108
폭	존속상해치사	0	0	3	1	0	4	0	0	1	0	0	0	9
력 범	<u>존속중</u> 상해	0	1	0	0	0	0	0	0	0	0	0	0	1
죄	존속폭행	4	4	2	2	3	6	2	3	5	3	2	1	37
	존속폭행치사	0	1	0	0	0	0	0	1	0	0	1	0	3
	존속폭행치상	0	1	1	0	0	0	0	2	0	0	0	1	5
	존속협박	0	2	0	0	0	1	0	0	0	0	0	0	3
	중상해	2	4	2	2	3	7	7	6	3	1	5	2	44
	집단흉기등폭행	0	0	0	0	0	0	0	0	0	0	0	1	1
	특가법(보복범죄등)	16	12	10	3	6	8	7	8	8	3	2	1	84
	특가법(보복상해등)	0	0	1	4	2	5	3	4	4	3	9	5	40

범	비브로마				2	։013կ	<u> </u>				2	։014է	<u> </u>	<b>TJ</b> =11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특가법(보복폭행등)	1	3	2	3	3	1	4	7	7	3	4	1	39
	특가법(보복협박등)	5	2	5	3	3	13	10	12	1	11	3	9	77
	특가법(운전자폭행등)	80	72	68	80	66	66	80	95	63	71	48	48	837
	특가법(협박)	0	0	0	0	0	0	0	0	1	0	0	0	1
	특수폭행	8	7	7	8	4	6	4	5	8	5	5	5	72
	특수폭행치상	0	0	0	0	0	0	0	0	1	0	0	0	1
	특수협박	9	11	3	7	11	9	6	10	6	3	5	5	85
	폭처법(공동상해)	391	379	330	341	302	333	392	456	256	287	359	134	3,960
	폭처법(공동상해)교사	0	0	0	0	0	0	0	2	0	0	0	0	2
	폭처법(공동존속상해)	0	0	3	0	1	0	0	0	3	0	0	0	7
	폭처법(공동폭행)	101	93	72	79	64	90	84	104	92	64	90	58	991
	폭처법(공동폭행)교사	0	0	0	0	0	0	0	0	4	0	1	0	5
	폭처법(공동협박)	4	10	6	2	20	17	19	6	8	9	8	10	119
	폭처법(공동협박)교사	0	0	0	0	0	0	0	0	0	0	1	0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2	0	0	0	0	0	0	0	0	1	0	0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0	0	0	0	1	0	0	2	0	0	0	0	3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0	0	0	0	0	0	1	0	2	0	0	0	3
	폭처법 (단체등의집단 · 흉기등상해)	11	0	0	0	1	0	0	0	0	0	3	0	15
	폭처법 (단체등의집단 · 흉기등폭행)	2	1	0	0	1	0	0	1	0	1	0	0	6
	폭처법 (단체등의집단 · 흉기등협박)	1	1	0	1	1	0	0	0	0	0	0	0	4
	폭처법(보복협박등)	0	0	0	0	0	0	0	1	0	0	0	0	1
	폭처법(상습상해)	6	6	5	13	9	12	13	9	9	10	6	1	99
	폭처법(상습존속상해)	0	0	0	0	1	0	0	1	1	1	0	0	4
	폭처법(상습존속폭행)	2	0	1	0	0	1	0	0	1	0	1	0	6
	폭처법 (상습집단 · 흉기등상해)	0	0	1	0	1	0	3	0	0	0	1	2	8
	폭처법 (상습집단 · 흉기등존속상해)	1	0	0	0	1	0	0	0	0	0	0	0	2

범	비브지대				2	013կ	<u> </u>				2	։014է	<u> </u>	지네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폭처법 (상습집단·흉기등폭행)	0	0	1	0	1	1	0	1	1	0	0	0	5
	폭처법 (상습집단·흉기등협박)	0	0	0	1	1	1	1	0	1	0	0	0	5
	폭처법(상습폭행)	0	3	4	3	6	11	5	5	8	6	5	4	60
	폭처법(상습협박)	1	1	0	2	2	0	1	0	0	1	1	1	10
	폭처법(야간 · 공동상해)	0	4	0	2	2	0	3	0	0	3	1	1	16
	폭처법(야간 · 공동협박)	0	0	1	0	0	0	0	0	0	0	0	0	1
	폭처법(집단 · 흉기등상해)	482	488	411	450	450	502	671	657	498	444	459	287	5,799
	폭처법 (집단 · 흉기등상해)교사	0	0	0	0	0	0	0	0	1	0	0	0	1
	폭처법 (집단 · 흉기등존속상해)	1	1	2	3	2	4	2	2	5	5	2	3	32
	폭처법 (집단 · 흉기등존속폭행)	2	1	0	2	1	1	2	0	0	0	0	0	9
	폭처법 (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2	0	3	2	3	2	3	3	0	1	0	1	20
	폭처법(집단 · 흉기등폭행)	85	93	98	104	122	118	127	140	98	103	111	61	1,260
	폭처법 (집단ㆍ흉기등폭행)교사	1	0	0	0	0	0	0	0	0	0	0	0	1
	폭처법(집단 · 흉기등협박)	131	137	131	137	129	158	194	204	152	140	161	92	1,766
	폭행	482	499	440	470	486	519	559	677	476	465	426	340	5,839
	폭행치사	6	6	8	6	3	10	12	11	5	8	2	4	81
	폭행치상	27	20	16	18	22	16	21	30	18	21	21	18	248
	협박	88	74	65	69	76	51	82	99	53	55	59	39	810
	협박교사	0	0	0	0	0	0	0	1	0	0	0	0	1
	합계	3,228	3,245	2,927	3,021	2,995	3,228	3,778	4,307	3,000	2,901	2,945	1,966	37,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987	1,002	848	874	813	815	915	991	722	807	733	584	10,091
교	특가법(도주차량)	476	473	390	443	394	411	430	502	325	348	359	230	4,781
통 범	특가법(도주차량)교사	0	0	0	0	0	0	0	0	1	0	0	0	1
죄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312	302	251	290	248	308	286	313	209	237	197	169	3,122
•	합계	1,775	1,777	1,489	1,607	1,455	1,534	1,631	1,806	1,257	1,392	1,289	983	17,995

범	내보기대				2	013է	<u> </u>				2	014է	<u> </u>	저궤
죄	세부죄명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체
선	공직선거법위반	114	69	50	44	30	20	19	11	9	21	16	5	408
거 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0	0	0	2	2	0	1	0	0	0	0	0	5
죄	합계	114	69	50	46	32	20	20	11	9	21	16	5	413
	조세범처벌법위반	-	-	-	4	19	52	60	87	68	77	92	78	537
조	지방세법위반	-	-	-	0	0	0	0	0	0	0	0	1	1
세	특가법(조세)	-	-	-	0	0	0	2	0	5	1	5	2	15
범 죄	특가법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	-	0	0	0	0	0	0	9	21	11	41
	합계	-	-	-	4	19	52	62	87	73	87	118	92	594
	공갈	-	-	-	0	10	11	20	22	26	26	25	12	152
	특경가법(공갈)	-	-	-	0	0	0	0	0	1	1	0	0	2
공	폭처법(공동공갈)	-	-	-	3	22	12	27	30	38	37	22	42	233
갈 범	폭처법(공동공갈)교사	-	-	-	0	0	0	0	0	0	1	0	0	1
죄	폭처법(상습공갈)	-	-	-	0	0	0	0	5	1	1	4	0	11
	폭처법(집단·흉기등공갈)	-	-	-	0	0	1	2	1	4	3	2	2	15
	합계	-	-	-	3	32	24	49	58	70	69	53	56	414
	<del>공용</del> 건조물방화	-	-	-	0	0	0	0	0	0	1	0	0	1
	공용자동차방화	-	-	-	0	0	1	0	0	1	0	0	0	2
	산림보호법위반	-	-	-	0	0	0	0	0	0	0	0	1	1
	일반건조물방화	-	-	-	0	3	1	2	4	3	2	4	2	21
	일반물건방화	-	-	-	0	2	3	3	3	2	4	3	1	21
방	일반자동차방화	-	-	-	0	0	3	1	4	4	2	6	2	22
화 범	현 <u>존</u> 건조물방화	-	-	-	0	0	0	4	1	2	0	1	0	8
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	-	-	0	0	0	1	0	0	0	0	0	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	-	-	0	0	0	0	0	0	0	0	1	1
	현주건조물방화	-	-	-	1	2	8	8	16	22	11	10	9	87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	-	0	1	0	0	0	1	1	0	1	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	_	0	0	0	1	1	1	2	1	1	7
	합계	-	-	-	1	8	16	20	29	36	23	25	18	176
	전체	5,256	5,292	4,605	4,837	4,727	5,009	5,697	6,504	4,619	4,672	4,619	3,210	59,047

## 다. 법원별 조사현황

해당기간(2013. 4. 1. ~ 2014. 3. 31.)에 조사된 제1기, 2기, 3기 양형기준 설정범 죄의 법원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범죄군				제1	기 설정범	<b>범죄</b>			
지방법원		살인 범죄	뇌물 범죄	성범죄	강도 범죄	횡령 · 배임범죄	위 <del>증</del> 범죄	무고 범죄	전체
서울중앙	수	26	65	535	44	612	83	117	1,482
시킬증증	비율	1.8	4.4	36.1	3.0	41.3	5.6	7.9	100.0
서울동부	수	14	4	171	18	191	32	40	470
시돌중구	비율	3.0	0.9	36.4	3.8	40.6	6.8	8.5	100.0
ПОГТН	수	23	39	288	37	270	63	49	769
서울남부	비율	3.0	5.1	37.5	4.8	35.1	8.2	6.4	100.0
서울북부	수	13	7	230	19	166	29	43	507
시골국구	비율	2,6	1.4	45.4	3.7	32.7	5.7	8.5	100.0
110111	수	17	14	278	32	188	44	43	616
서울서부	비율	2,8	2,3	45.1	5.2	30.5	7.1	7.0	100.0
의정부	수	44	24	485	59	315	54	85	1,066
48T	비율	4.1	2,3	45.5	5.5	29.5	5.1	8.0	100.0
인천	수	47	52	550	70	483	105	111	1,418
인선	비율	3.3	3.7	38.8	4.9	34.1	7.4	7.8	100.0
수원	수	99	73	1,086	144	791	134	155	2,482
<b>구전</b>	비율	4.0	2,9	43.8	5.8	31.9	5.4	6.2	100.0
춘천	수	40	17	214	31	142	45	32	521
군선	비율	7.7	3,3	41.1	6.0	27.3	8.6	6.1	100.0
대전	수	62	46	519	92	383	84	90	1,276
네인	비율	4.9	3,6	40.7	7.2	30.0	6.6	7.1	100.0
ᅯᄌ	수	32	8	174	28	118	35	39	434
청주	비율	7.4	1.8	40.1	6.5	27.2	8.1	9.0	100.0
rll ¬	수	71	62	665	135	408	83	134	1,558
대구	비율	4.6	4.0	42.7	8.7	26.2	5.3	8.6	100.0

	범죄군			제*	l기 설정빔	범죄	제1기 설정범죄											
지방법원		살인 범죄	뇌물 범죄	성범죄	강도 범죄	횡령 · 배임범죄	위 <del>증</del> 범죄	무고 범죄	전체									
HAL	수	45	85	492	113	410	143	137	1,425									
부산	비율	3,2	6.0	34.5	7.9	28.8	10.0	9,6	100.0									
울산	수	17	9	181	19	118	12	22	378									
돌앤	비율	4.5	2,4	47.9	5.0	31,2	3,2	5,8	100.0									
창원	수	56	39	388	78	301	61	77	1,000									
성권	비율	5.6	3.9	38.8	7.8	30.1	6.1	7.7	100.0									
광주	수	43	47	518	93	346	56	91	1,194									
<b>5</b> T	비율	3,6	3.9	43.4	7.8	29.0	4.7	7.6	100.0									
전주	수	32	28	269	39	153	47	27	595									
신구	비율	5.4	4.7	45.2	6.6	25.7	7.9	4.5	100.0									
ᅰᄌ	수	24	9	119	13	46	9	25	245									
제주	비율	9.8	3.7	48.6	5.3	18.8	3.7	10.2	100.0									
지테	수	705	628	7,162	1,064	5,441	1,119	1,317	17,436									
전체	비율	4.0	3,6	41.1	6.1	31.2	6.4	7.6	100.0									

##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į	범죄군				제2기 설	설정범죄				
지방법원		약취 · 유인범죄	사기 범죄	절도 범죄	<del>공문</del> 서 범죄	사문서 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식품 · 보건범죄	마약 범죄	전체
서울중앙	수	6	3,916	953	157	205	422	611	427	6,697
시킬증증	비율	0.1	58.5	14.2	2,3	3.1	6.3	9.1	6.4	100.0
서울동부	수	4	1,312	444	45	65	157	113	79	2,219
VIEOT	비율	0.2	59.1	20.0	2.0	2,9	7.1	5.1	3.6	100.0
서울남부	수	3	2,180	570	66	88	273	160	121	3,461
시돌급도	비율	0.1	63.0	16.5	1.9	2,5	7.9	4.6	3.5	100.0
서울북부	수	2	1,200	392	32	37	238	111	124	2,136
시골국구	비율	0.1	56.2	18.4	1.5	1.7	11.1	5.2	5.8	100.0
ПОПН	수	2	1,427	380	28	57	165	180	161	2,400
서울서부	비율	0.1	59.5	15.8	1,2	2.4	6.9	7.5	6.7	100.0

ļ.	범죄군				제2기 실	설정범죄				
지방법원		약취 · 유인범죄	사기 범죄	절도 범죄	<del>공문</del> 서 범죄	사문서 범죄	공무집행 방해범죄	식품 · 보건범죄	마약 범죄	전체
의정부	수	0	2,114	715	49	129	326	177	237	3,747
-101	비율	0.0	56.4	19.1	1.3	3.4	8.7	4.7	6.3	100.0
인천	수	4	3,049	1,090	104	173	402	313	502	5,637
111	비율	0.1	54.1	19.3	1.8	3.1	7.1	5.6	8.9	100.0
수원	수	16	4,830	2,067	197	261	782	465	582	9,200
<b>구전</b>	비율	0.2	52.5	22.5	2.1	2.8	8.5	5.1	6.3	100.0
중위	수	0	1,022	449	85	56	163	143	121	2,039
춘천	비율	0.0	50.1	22.0	4.2	2.7	8.0	7.0	5.9	100.0
대전	수	3	2,518	1,113	108	133	355	364	170	4,764
내신	비율	0.1	52.9	23.4	2,3	2.8	7.5	7.6	3,6	100.0
원조	수	1	814	392	26	41	96	107	52	1,529
청주	비율	0.1	53.2	25.6	1.7	2.7	6.3	7.0	3.4	100.0
-117	수	5	3,049	1,348	112	132	425	387	316	5,774
대구	비율	0.1	52.8	23.3	1.9	2.3	7.4	6.7	5.5	100.0
HAL	수	4	3,326	1,118	77	145	389	419	640	6,118
부산	비율	0.1	54.4	18.3	1.3	2.4	6.4	6.8	10.5	100.0
OAL	수	2	742	302	24	51	119	61	78	1,379
울산	비율	0.1	53.8	21.9	1.7	3.7	8,6	4.4	5.7	100.0
<del>-</del> 101	수	4	1,673	735	29	85	349	249	340	3,464
창원	비율	0.1	48.3	21.2	0,8	2.5	10.1	7.2	9,8	100.0
고	수	2	2,481	1,026	60	114	287	235	84	4,289
광주	비율	0.0	57.8	23.9	1.4	2.7	6.7	5.5	2.0	100.0
고조	수	1	1,084	576	29	64	138	145	57	2,094
전주	비율	0.0	51.8	27.5	1.4	3.1	6,6	6.9	2.7	100.0
ᅰᄌ	수	0	378	251	13	15	130	49	16	852
제주	비율	0.0	44.4	29.5	1.5	1.8	15.3	5,8	1,9	100.0
TJ-II	수	59	37,115	13,921	1,241	1,851	5,216	4,289	4,107	67,799
전체	비율	0.1	54.7	20.5	1.8	2.7	7.7	6.3	6.1	100.0

##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 \	범죄군				제3기 실	설정범죄				
지방법원		증권 · 금융범죄	지식재산권 범죄	폭력 범죄	교 <u>통</u> 범죄	선거 범죄	조세 범죄	공 <u>갈</u> 범죄	방화 범죄	전체
서울중앙	수	184	208	2,585	777	40	76	29	11	3,910
시킬증증	비율	4.7	5.3	66.1	19.9	1.0	1.9	0.7	0.3	100.0
서울동부	수	9	78	1,224	449	5	15	20	2	1,802
시골공구	비율	0.5	4.3	67.9	24.9	0.3	0.8	1,1	0.1	100.0
서울남부	수	20	73	1,700	550	18	19	10	5	2,395
시돌답도	비율	0,8	3.0	71.0	23.0	0.8	0.8	0.4	0.2	100.0
서울북부	수	29	57	1,302	382	5	9	7	8	1,799
시골국구	비율	1,6	3,2	72.4	21.2	0,3	0.5	0.4	0.4	100.0
110118	수	17	72	1,229	430	11	2	15	7	1,783
서울서부	비율	1.0	4.0	68.9	24.1	0,6	0.1	0,8	0.4	100.0
이커브	수	9	66	1,994	1,152	26	18	39	4	3,308
의정부	비율	0.3	2.0	60.3	34.8	0.8	0.5	1.2	0.1	100.0
01-71	수	15	125	2,824	1,431	11	49	37	19	4,511
인천	비율	0.3	2,8	62.6	31.7	0,2	1.1	0.8	0.4	100.0
A.0.I	수	58	198	5,094	2,535	25	74	49	22	8,055
수원	비율	0.7	2.5	63.2	31.5	0.3	0.9	0,6	0.3	100.0
중위	수	1	18	1,464	804	12	22	3	6	2,330
춘천	비율	0.0	0,8	62.8	34.5	0.5	0.9	0.1	0.3	100.0
FUTA	수	16	87	2,619	1,622	37	44	23	11	4,459
대전	비율	0.4	2.0	58.7	36.4	8.0	1.0	0.5	0.2	100.0
-17	수	5	25	967	677	9	15	13	4	1,715
청주	비율	0.3	1.5	56.4	39.5	0.5	0.9	0.8	0.2	100.0
-II ¬	수	16	116	3,486	1,885	59	70	42	29	5,703
대구	비율	0.3	2.0	61.1	33.1	1.0	1.2	0.7	0,5	100.0
ни	수	39	180	3,160	1,048	37	63	48	9	4,584
부산	비율	0.9	3.9	68.9	22.9	8.0	1.4	1.0	0.2	100.0
0.11	수	14	23	973	517	25	7	3	4	1,566
<del>울</del> 산	비율	0.9	1.5	62.1	33.0	1.6	0.4	0,2	0.3	100.0

The state of the s	범죄군		제3기 설정범죄										
지방법원		증권 · 금융범죄	지식재산권 범죄	폭력 범죄	교통 범죄	선거 범죄	조세 범죄	공 <u>갈</u> 범죄	방화 범죄	전체			
÷LOI	수	10	46	2,526	989	42	32	18	7	3,670			
창원	비율	0.3	1.3	68.8	26.9	1.1	0.9	0.5	0,2	100.0			
광주	수	9	61	2,597	1,703	27	51	31	22	4,501			
お子	비율	0.2	1.4	57.7	37.8	0.6	1,1	0.7	0.5	100.0			
전주	수	1	21	1,197	718	20	28	21	3	2,009			
신구	비율	0.0	1.0	59.6	35.7	1.0	1.4	1.0	0.1	100.0			
ᆌᄌ	수	3	5	600	326	4	0	6	3	947			
제주	비율	0.3	0.5	63.4	34.4	0.4	0.0	0,6	0.3	100.0			
TIAII	수	455	1,459	37,541	17,995	413	594	414	176	59,047			
전체	비율	0,8	2.5	63,6	30.5	0.7	1.0	0.7	0.3	100.0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 1 개요

운영지원단에 소속된 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가 되는 양형자료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지원단 본부 및 전국 13개 법원에 분산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양형자료분석관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업무수행능력을 증진하는 한편, 양형자료조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석관 워크 숍 및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규 전입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2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주제발표와 의견교환, 자유토론을 통해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 점검 업무의 효율성·통일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형자료분석관 워크 숍을 개최하였다.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은 분석관들로 하여금 분석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은 물론, 양형자료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분석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나. 실시 내역

#### (1) 일시 · 장소

▶일 시:2013.9.27.~9.28.

▶장 소:양평 kobaco연수원

#### (2) 참석

- ▶ 운영지원단장
- ▶ 기획운영과 직원(과장 포함 5명)
- ▶ 양형자료분석관(14명)
- ▶ 자료조사과 직원(과장 포함 2명)
- ▶ 통계분석과 직원(과장 포함 4명)

#### (3) 주제 발표

주 제	발표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양형인자 적용과 운영점검	자료조사과장
교통범죄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실무 검토	서두현
폭력범죄 운영점검의 몇가지 유의점	전용준
양형자료조사표 작성에 관한 검토	이형관

## ③ 양형자료분석관 정기 토<del>론</del>회

####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나 실시 내역

#### (1) 2013, 12, 19, 토론회

- ▶ 일시 · 장소
  - 2013. 12. 19.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 참석대상
  - 양형자료분석관(15명)
  -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서무행정관(이상 3명)
- ▶ 토론 내용
  - 양형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양형기준 준수여부 판단
    - 양형이유 미기재 시 판결문상 특별양형인자 확인을 통한 운영점검 방안 모색
  - 운영점검 결과로 살펴본 양형기준 부준수 사유 분석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 성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부준수 판결에서 공통되는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양형기준 수정 사항 점검
  - 사기죄와 문서에 관한 죄의 경합범과 기타 양형인자에 관한 검토
    - 사기죄와 문서에 관한 죄 경합 시 운영점검방법 토론

#### (2) 2014, 4, 23, 토론회

- ▶ 일시 · 장소
  - 2014, 4, 23,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 참석 대상
  - 양형자료분석관(11명)
  -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서무행정관(이상 3명)
- ▶ 토론 내용
  - 마약범죄 운영점검 쟁점 사례 고찰
    - 적용법조가 다양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이 많은 마약범죄 사례분석 을 통한 운영점검 정확성 제고 방안 모색
  - 절도죄의 운영점검상 제문제
    - 다양한 양형인자의 적용 사례를 통한 운영점검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 토론

#### 4 양형자료분석관 교육

#### 가. 필요성

운영지원단은 신규 분석관 및 직원들로 하여금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 나. 실시 내역

#### (1) 일시 · 장소

- ▶ 일시: 2014. 1. 13. ~ 1. 15.
- ▶ 장소 : 법원공무원교육원 213호 강의실 및 315호 멀티전산실

#### (2) 교육대상 및 교육지원

- ▶ 교육대상 : 전입 양형자료분석관(9명)
- ▶ 교육지원 : 양형자료분석관 등(8명)
- ▶ 강사 : 사법지원심의관 및 운영지원단장, 양형자료분석관 등(7명)

#### (3) 교육내용

- ▶ 양형위원회의 현황과 향후 계획
  - 양형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업무 계획
- ▶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자료조사표 작성 방법
  - 양형자료조사의 의미 및 필요성
  - 양형자료조사에 관한 이론 및 조사방법
  - 양형자료조사표의 작성 및 신양형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 실습
-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개요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표 작성 및 양형기준 운영점검 프로그램 사용방법 실습

## 제10장 양형자료 통계분석 지원

#### 1 개요

운영지원단은 통계분석과에 통계전문 담당자를 배치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통계분석 프로그 램을 통한 양형현황 분석 및 양형인자 추출작업 등을 통하여 구체적 양형기준 설 정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를 다음과 같이 양형위원회에 제공하였다.

#### 2 통계분석자료 지원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필요한 통계분석자료와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중 양형기준 수정작업에 필요한 적용현황 분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으로써 전문위원단의 효율적인 연구업무를 지원하였다.

#### ■ 제4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 [1]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법위반
  - 2008. 1, 1, ~ 2012. 12, 31, 선고사건
  - 수수금액별(1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4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대상범죄에 대한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평균형량

#### [2]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증재
  - 2008. 1. 1. ~ 2012. 12. 31. 선고사건
  - 수수금액별(1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4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1만) 대상범죄에 대한 선고내역 및 형량부포, 평균형량

#### [3]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2008, 1, 1, ~ 2012, 12, 31, 선고사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제18조, 제19조, 제20조) 사건 에 대한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 [4]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
  - 2006, 1, 1, ~ 2012, 12, 31, 선고사건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세부죄명에 따른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 [5] 장물, 손과 및 게임물범죄

- 장물, 손괴
  - 2009. 1. 1. ~ 2013. 12. 31. 선고사건
  - 장물, 손괴범죄의 세부죄명에 따른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 • 게임물범죄

- 2009. 1. 1. ~ 2013. 12. 31. 선고사건
- 게임물범죄의 세부죄명에 따른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 [6]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2009, 1, 1, ~ 2013, 12, 31, 선고사건
  - 권리행사방해범죄의 세부죄명에 따른 선고내역 및 형량분포

#### • 업무방해

- 2009. 1. 1. ~ 2013. 12. 31. 선고사건
- 업무방해범죄의 세부죄명 중에서 개별양형인자인 '범행방법'의 항목 분류를 통한 선고내역, 형량분포, 평균형량

#### ■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 ■

#### [1] 약취 · 유인범죄

- 약취 · 유인
  - 2011, 7, ~ 2012, 12, 선고사건
  - 각 유형별 선고내역, 형량분포, 양형기준 준수여부 등
  - 약취 · 유인범죄 부준수 사건리스트